2016년 개정 행동강령 해설 및 사례집 견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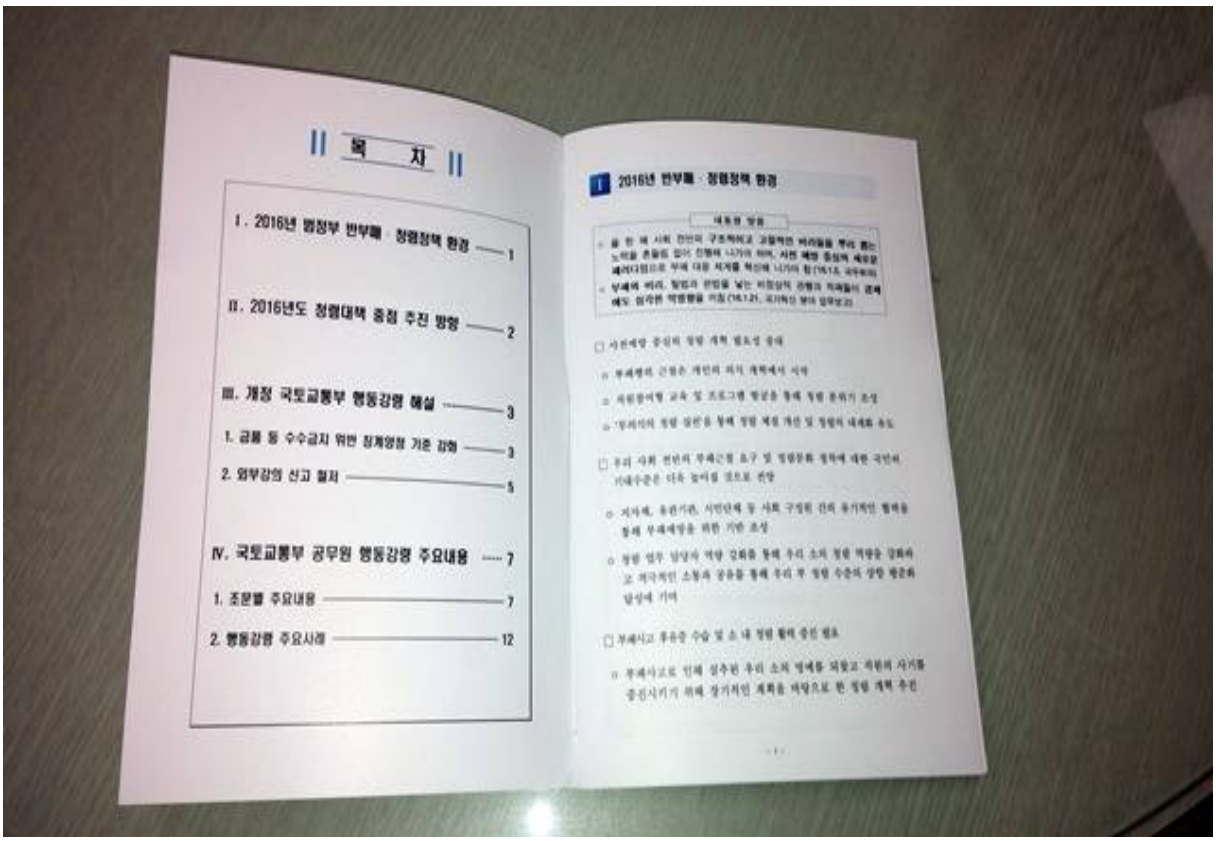

II 2016년도 청렴대책 중점 추진 방향

「청렴 르네상스 3개년 계획」 으로 청렴한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건설

청렴 재시작 [Restart] 새로운 도약	청렴 재탄생 [Rebirth] 내실화 추진	청렴 르네상스 [Renaissance] 공고화 달성
시책평가 우수 진입	시책평가 우수 3위권	시책평가 매우우수 달성
2016 년	2017 년	2018 년

실천전략

청렴 르네상스 3개년 계획 추진 [청렴 3R 계획]

☐ Restart : 청렴한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원년 선포(2016년)

- ○ 자체 진단을 통해 장기적 청렴 비전 설계
- ○ 전 직원 청렴 르네상스 3개년 계획 비전 공유
- ○ 청렴 르네상스 3개년 계획 기반 조성
- ○ 청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Rebirth : 청렴 재탄생으로 내실화 추진(2017년)

- ○ 청렴 재탄생을 통해 2017년 청렴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위상 확립 목표

☐ Renaissance : 청렴 르네상스로 공고화 달성(2018년)

- ○ 청렴 르네상스 달성으로 우리 부 청렴도 상향평준화에 기여

- 2 -

III 개정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해설

1 금품 등 수수금지 위한 정계양정 기준 강화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정계양정,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이상 수뢰	100만원 이상 뇌물	100만원 미만
1. 직위·부당한 지위의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제2항제4호에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3 -

V 행동강령 주요사례

1. 직무관련자

Q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자인데, 어디서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소관업무'란 정책, 조직, 규정 등에 지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인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됨

- '공공정책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관련 여부를 가늠, 추론, 금액 등 그 밖의에 관계없이 장당인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처벌

Q2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공사 관리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하도급업체도 직무관련자임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처리

Q3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상급자에게 서면(공사수주 요청)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음.
- = 소명서없이 또는 **해치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해치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는 징계 등 조치 가능)

- 12 -

Q4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생각하여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거부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상급자의 지시임지라도 정확한 사유를 소명하여 없는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처벌을 받아 함
- = 위법한 지시에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4.4.23 선고 93.4.426 판결 참조)

3. 특별인 해제

Q5 직무수행 상대방과의 사인 개인 혈연·학연·종교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는지?

- 사인 개인 등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될 수 없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 특혜 : 법률 등의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타 집단과 차별되는 혜택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 = 다른 동행자와 비교하여 보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되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사회적 이해를 주어서 함

Q6 기관 내 종교모임이 직장 종교인과의 모임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 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음. 기관장이 해당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 =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연고·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13 -